

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

제정 2015. 6. 1. 개정 2015. 8. 31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 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10조 및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 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대상) 이 규정의 적용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(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, 교직적성·인성검사 등)를 대상으로 하되, 실기고사(예체능)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.

제 3 조 (구성) ① 제2조에 따른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1처장이 되고,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8.31.>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하며,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입학홍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15.8.31.>

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 및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
2.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내용,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
3.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
4.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
- 5.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)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결과의 공시)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제 7 조 (수당 등 지급)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기타)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2조(구성 및 운영) ③항, ⑤항의 입학처장 명칭은 '입학홍보1처장' 입학처 명칭은 '입학홍보처' 로 개정한다.